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93년 7월 6일
- 나. 제안자 : 부천시청
- 다. 회부일자 : 93년 7월 7일
- 라. 상정일자 : 93년 7월 21일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담당관 김 정 호)

가. 제안이유

- 광역행정 수요의 급격한 증가와 향후 자치단체장 선거이후 예상되는 지역 이기주의(NIMBY 현상)의 가속화에 대비하여
- 부천시를 중심으로 한 인근 자치단체간에 관련된 현안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 행정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하여 관련 자치단체간의 공동규약을 제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행정협의회 구성) ②항 :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 각 거친 다음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주요내용
 - 명 칭 :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 구성자치단체 : 8개 시, 군, 구
 - 중심 자치단체(회장) : 부천시(장)
 - 관련 자치단체(위원) : 광명시, 시흥시, 김포군, 강화군, (서울)구로구, 양천구, (인천)북구청(장)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제14조 1항 실무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 실무협의회 구성에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 실무협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시의회와 사전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은? · 규약안 제정자체가 다소 늦은 감이 있음	· 중요사항이 추진사항은 시의회에 사전의견 및 추진사항을 사전 보고하도록 하겠음. · 주요사업 시행 및 시, 군간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사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음. · 부천시가 주관이 되며 구성하는 서부수도권 협의회인만큼 부천시의회가 타 시·군 보다 먼저 안건을 통과시켜야 함.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협의회사무실은 부천시청내에 둔다는 규정으로 수정해야 하지 않는지? • 부천시가 원안통과 시켰을 경우 타 시·군이 수정통과 시킨 경우는 조례를 재개정해야 되지 않는지?	• 대외적으로 청이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음. • 타 시·군이 수정의결하였을 경우에는 부천시의 조례를 재개정하여야 하나 부천시가 주축이 되어 구성하는 규약안만큼 선도적으로 부천시가 의결을 하여야 할 것임.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8. 체계적 심사내용

○ 없 음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안)

의안번호	181
의 결	제21회
년 월 일	(93. 7. 23)

제출년월일 : 1993. 7. 6

제 안 자 : 부천시장

□ 제안사유

- 광역행정 수요의 급격한 증가와 향후 자치단체장 선거이후 예상되는 지역이기주의(NIMBY현상)의 가속화에 대비하여
- 부천시를 중심으로 한 인근 자치단체항간에 관련된 현안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 행정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하여 관련 자치단체간의 공동규약을 제정하기 위함.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행정협의회 구성) ②항 :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주요내용

1. 명 칭 _____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2. 구성 자치단체 _____ 8개 시·군·구
 - 중심 자치단체(회장) : 부천시(장)
 - 관련 " (위원) : 광명시, 시흥시, 김포군, 강화군 (서울)구로구, 양천구, (인천)북구청(장)
3. 조 직
 - 실무협의회 구성
 - 위원장 : 부천시 기획실장
 - 위 원 : 관련 자치단체의 광역행정 담당과장
 - 자문위원 위촉
 - 대 상 : 국가 특별행정기관의 장, 관련 공공단체의 장, 관계전문가
 - 위촉방법 : 행정협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회장이 위촉
4. 기 능(주요협의대상)
 -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 조성
 - 버스 노선의 신설, 변경 및 폐지
 - 도로의 신설 및 개보수
 - 상·하수도 설치
 -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감시에 관한 사항
 -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 기타 광역개발 및 광역행정 수행상 필요한 사항 등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안)

제1조(목적)

부천시를 중심으로 한 인근 지방자치단체 간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써 권역내의 균형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2조(사무소의 위치)

협의회의 사무소는 부천시에 둔다.

제3조(구성)

협의회의 구성은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김포군, 강화군 및 서울특별시의 양천구, 구로구, 인천직할시의 북구로 한다.

제4조(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 1인과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③ 회장은 부천시장으로 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부천시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이 대리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제5조(기능) ① 협의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인접지역과 관련되는 도시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 구역내의 건축 및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3.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4. 인접지역과 관련되는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등의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5. 행정구역 경계관리등 사무의 협의, 조정 또는 공동처리에 관한 사항
6. 자원의 개발 이용, 조사에 관한 사항
7. 환경오염 방지 및 감시에 관한 사항
8. 인접지역간 연결 비스노선의 신설, 연장등 교통망 확장에 관한 사항
9. 주요 연결도로등 도로망의 신설, 변경, 확장, 포장 등에 관한 사항
10.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11. 개발제한 구역내에서의 공동감시, 단속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
12. 자원 및 생산물의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1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자료, 정보, 기술의 교환
14. 기타 광역개발 및 광역 행정 수행상 필요한 사항
15. 제1호 내지 제14호 이외에 협의회 협의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 각호의 사항중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계획 확정 이전에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협의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협의방법) ① 위원은 협의안건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실무협의회의 사전검토를 받아 30일이내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특히 시도를 달리하는 관련 자치단체간 협의안건중 예산 또는 기타 정책긴정과 관련되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은 반드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안건의 협의는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7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 2회로 하되 3~4월과 9~10월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되 회장은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안건을 준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⑤ 회장은 협의회 개최후 14일 이내에 협의회 개최결과를 안전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협의 결과가 통보된 때에는 안전관련 협의회 위원은 소관상급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처리)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부천시 기획담당관으로 하고 서기는 부천시 기획계장으로 한다.

제9조(회의록 작성)

협의회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제출 요구등)

협의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개진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미합의 사항의 조정요청)

회장은 협의회에서 2회이상 협의해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나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가 조정 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중에서 협의회 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안전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기획담당관 또는 이에 준하는 광역행정 담당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정안전에 따라 관계 국·과장과 지역주민 대표등 이해관계인이 배석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부천시 기획실장이 되며 간사 및 서기는 제8조 제1항, 제2항을 준용한다.

④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실무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여야 한다.

⑤ 실무위원장은 협의 안전의 실무 검토 의견서를 본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고 본 협의회 개최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경비부담)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분담할 수 있도록 한다.

제16조(회계)

협회의 회계 상황은 매년 첫번째 회의를 간사가 보고하며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규약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18조(보칙)

협회가 운영상 필요한 기타 사항은 협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약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결과

가. 제안일자 : '93. 7. 6.

나. 제안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93. 7. 2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산업과장

나. 제안이유

- '93. 2. 1 오정구가 신설되고 남구가 소사구로 중구가 원미구로 구명칭이 변경되어 관할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실정에 맞게 구 농지관리위원회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함.

다. 주요골자

- 농지관리위원회 명칭개정
- 농지관리위원회 정수개정
- 위원의 추천 및 위촉

3. 질의 및 답변내용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5조 및 16조 내용은?	○ 농지관리위원회 설치와 위원회 구성임.
○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5조에 시·구·읍에 설치한다고 하였는데 부천시는 하나만 있어도 되지 않는가?	○ 자치구가 아닌 구도 해당되는지 상급기관에 질의한 결과 부천시의 구도 해당되어 3개구에 설치하게 되었음
○ 소사구는 농업관련 기관 추천위원이 없는 이유는?	○ 법상 관할구역내로 제한하고 있다보니 남구는 농업관련 기관이 없음